

의안번호	제434호
의결 연월일	2012년 12월 20일 (제316회)

**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 
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2년 12월 4일

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12 . 04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'법령입안 심사기준'에 따라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삭제(안 제1조)
- 나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함(안 제2조)
- 다.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 하여야 하는 물품의 단가를 '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'에서 '2천만원 이상'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 - (2) 입법예고(2012.10.19. ~ 2012.11. 8.)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행정과 협의결과 이견 없음(2012.10.29.)

(4) 부패영향평가 : 감사관 협의결과 이견 없음(2012.11. 7.)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교육비특별회계“를 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“로 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“을 “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두는 교육감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“을 “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“으로 한다.

제17조 제4항 중 “5백만원“을 “2천만원“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“를 “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“으로 한다.

제22조 제2항 중 “물품출납원“을 “물품출납원은“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</u> 각급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의 취득, 보관, 사용,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본청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<u>교육감과 그 보조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교육청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<u>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</u>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두는 교육감과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 기관-----.</p>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 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<u>5백만원</u>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「부동산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 ----- <u>2천만원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<u>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</u>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-----<u>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</u> 또는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2조(물품의 망실훼손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<u>물품출납원</u>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물품의 망실훼손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물품출납원</u>은----- ----- -----.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[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]

제18조(교육감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·도를 대표한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“지역교육청”이라 한다)을 둔다.